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84
----------	------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및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계정의 구분 및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안 제5조~제7조)
- 나.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함(안 제8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6. 2. 26. ~ 3. 1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 (☎2133-695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2. 강북등발전계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부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강북등발전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2호 중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2. 강북등발전계정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신 설>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
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
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
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
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
경비

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
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
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
익금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
입금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
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
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분임기금운용관 : 도시공간전략과장

3. (생략)

② (생략)

제8조 (생략)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강북등발전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도시계획과장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u>제9조</u>(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도시공간전략과</u>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u>제10조</u> ~ <u>제13조</u> (생 략)	<u>제10조</u>(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도시계획과장</u>----- -----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u>제11조</u> ~ <u>제14조</u>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계정의 구분과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02-2133-6956)